#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2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최은석・김희정・고동진

박충권 • 이인선 • 김기현

김성원 • 권성동 • 박덕흠

정동만 · 김상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

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 액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한다)의 세대주-----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 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 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다)----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 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 ------지급하는 경우 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 (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조에서 같다)-----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합산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1   |
|--------------------|
|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    |
| 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   |
| 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 합산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
| 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9   |
| 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    |
| 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 |
|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
|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
|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  |
| 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
| 로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
| <u>④</u> 제1항 및 제2항 |
|                    |
|                    |
|                    |